

제 6 1 회 변 리 사 시 험 대 비

j i i n

DESIGN LAW

최 근 1 6 개 년
진 도 별
기 출 문 제

이 준 권

ver. 03

디자인보호법

제 1 장

총 칙

j i i n DESIGN LAW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55-01-1]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55-01-4]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 가치에 해당 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3. [55-01-3]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
4. [55-10-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5. [55-10-2]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6. [55-10-3]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별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7. [55-10-4]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8. [55-10-5]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디자인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9. [54-01-1] 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 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10. [54-01-2]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
11. [54-01-4]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
12. [54-01-5]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대상이 아니다. ()
13. [53-02-5]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14. [52-07-1]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심미성이란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15. [45-03-3] ‘도로의 입체교차로’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16. [50-02-1] ‘이동화장실’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17. [45-03-5]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18. [50-02-4]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19. [50-02-5] ‘초콜릿 바’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0. [50-02-6]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1. [47-01-1] ‘투명한 용기에 담아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피약할 수 있게 한 각테일 음료’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2. [47-01-2] ‘형상이 연속하는 텔실’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3. [45-03-6]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4. [47-01-4] ‘입상물을 고형화한 고형사탕’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5. [47-01-5] ‘사각형태로 접은 형상 및 모양의 와이셔츠’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26. [45-03-2]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 형태’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디자인보호법 총칙 관련

27. [60-01-1]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28. [60-01-2]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29. [60-01-3]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
30. [60-01-4]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31. [55-01-2]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
32. [50-05-4]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33. [45-09-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
34. [45-09-2]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
35. [45-09-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36. [45-09-4]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
37. [45-09-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38. [57-05-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
39. [54-10-1]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선정·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
40. [59-01-1]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41. [58-01-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42. [51-09-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에 따른 보정 기간,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3. [51-09-4]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4. [51-09-5]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에는 직권으로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 45.** [60-09-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ㄱ)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 46.** [60-09-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ㄴ)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 47.** [59-01-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 48.** [58-01-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 49.** [59-01-3]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지 못한다. ()
- 50.** [59-01-4]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 51.** [50-05-5]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자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52.** [58-01-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 53.** [58-01-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 54.** [58-01-5]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디자인보호법

제 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j i i n DESIGN LAW

물품의 동일·유사

55. [49-01-1] 물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출원 한 디자인의 신규성 여부나 타인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
56. [49-01-2] 물품의 동일·유사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기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
57. [49-01-3] 만년필과 볼펜은 그 물품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는 필기구로서 용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물품은 유사물품이라 할 수 있다. ()
58. [49-01-4] 비유사 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59. [49-01-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물품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 ()
60. [59-03-1]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
61. [59-03-3]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동일·유사

62. [50-01-4]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63. [58-09-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64. [60-05-5]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65. [52-10-5]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66. [57-03-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67. [52-02-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68. [55-02-4]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
69. [54-05-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70. [52-02-2]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71.** [55-02-5]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 72.** [50-10-1]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 73.** [57-03-3]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74.** [50-10-4]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
- 75.** [52-02-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76.** [59-03-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아니 된다. ()
- 77.** [57-03-4]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변화된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
- 78.** [50-10-3]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
- 79.** [55-02-1]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80.** [57-03-5]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81.** [50-10-5]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
- 82.** [52-02-4]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
- 83.** [50-10-2]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 84.** [52-02-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 85.** [57-03-2]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86.** [53-04-1]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
- 87.** [55-02-2]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

- 88.** [55-02-3]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공업상이용가능성

- 89.** [54-01-3] 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90.** [50-02-2] ‘동물박제’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91.** [45-03-4]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92.** [49-09-2]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아유,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
- 93.** [50-02-3] ‘유리공예작품’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94.** [45-03-1] ‘판화를 인쇄한 달력’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95.** [47-01-3]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어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 캔디’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96.** [45-03-7] ‘아이스 캔디’는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
- 97.** [58-09-4]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
- 98.** [57-06-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99.** [57-06-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 할 수 있다고 본다. ()
- 100.** [50-01-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 101.** [51-05-2]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불 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 102.** [57-06-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103.** [56-08-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 104.** [56-08-2]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105.** [51-05-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106.** [56-08-3]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정도와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107.** [56-08-4]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108.** [56-08-5]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
- 109.** [51-05-3]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 110.** [51-05-5]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 111.** [48-08-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색채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
- 112.** [46-02-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색채를 표현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
- 113.** [48-08-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물품의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재질 또는 크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 114.** [46-02-5]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재질 또는 크기 등에 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115.** [48-08-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백색과 흑색으로 표현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 116.** [46-02-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색채가 백색 및 흑색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백색 및 흑색에 대하여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 117.** [48-08-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중 일부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118.** [46-02-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이 입체를 표현한 경우에 정면도 이외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119.** [48-08-4]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그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다. ()
- 120.** [46-02-3]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신규성

- 121.** [60-04-4]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 122.** [60-04-5] 전사지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
- 123.** [60-05-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 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
- 124.** [52-08-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띤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
- 125.** [52-08-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126.** [52-08-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

- 127.** [51-06-3] 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없다. ()
- 128.** [52-08-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 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129.** [52-08-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130.** [51-06-1] 디자인권자 甲은 등록디자인 물품을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동종업자인 乙에게 납품하였고 甲과 乙이 그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디자인 물품이 전기로에 설치, 가동됨으로써 관련 직원이나 방문객 등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공연실시된 것이 아니다. ()
- 131.** [51-06-2] 철도용 거리 표지판인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철도공사에 의하여 철로 주변에 시험 설치된 것이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32.** [51-06-4]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디자인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133.** [51-06-5]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육면도나 참고사지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134.** [48-01-3] 일반인이 관람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과 동일한 형태의 벽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벽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 135.** [48-01-4] 디자인학 교수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의 견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 136.** [48-01-5] 전사지로 전사한 모양을 표면에 표현한 찻잔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찻잔의 표면에 전사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의 전사지가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전사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 137.** [45-07-4]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38.** [45-07-5]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창작비용이성

- 139.** [52-03-1]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40.** [59-05-1]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41.** [59-05-3]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42.** [59-05-4]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 143.** [58-09-3]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 144.** [50-01-1] 공지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45.** [55-05-4] 주지의 형상·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
- 146.** [50-01-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 147.** [59-05-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 148.** [55-05-1]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49.** [49-04-2]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포함된다. ()
- 150.** [55-05-2]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
- 151.** [55-05-3]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
- 152.** [55-05-5]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
- 153.** [52-03-5]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
- 154.** [52-03-2]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155.** [50-01-3]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56.** [52-03-3]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
- 157.** [52-03-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58.** [60-01-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159.** [49-04-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 160.** [49-04-3]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창작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비유사물품 간에는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
- 161.** [48-01-2]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확대된 선출원

162. [60-05-3]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 제3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163. [60-05-4]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
164. [54-06-5]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 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65. [49-07-2]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
166. [49-09-3]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디자인공보 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사진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
167. [49-07-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출원이 거절되기 위해서는 그 선출원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디자인공보, 디자인보호법 제56조의(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
168. [49-07-3]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69. [49-07-4] 선출원이 완성품인 경우는 물론 부품인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
170. [49-07-5]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날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71. [46-09-1] 선출원디자인이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디자인이고, 후출원디자인이 그 선출원디자인의 모양을 제외하고 형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172. [46-09-3] 선출원디자인과 후출원디자인이 모두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부등록사유

173. [48-05-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가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
174. [52-07-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75. [48-05-2]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 포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76. [53-05-1]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77. [53-05-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78. [53-05-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179. [52-07-2]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80.** [48-05-3]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
- 181.** [60-08-2]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82.** [48-05-4]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183.** [53-05-2]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 184.** [53-05-3]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185.** [49-09-1]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
- 186.** [48-05-5]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관련디자인

- 187.** [60-08-4]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선출원)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188.** [58-07-1]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
- 189.** [58-07-2]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90.** [58-07-3]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구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 191.** [58-07-4]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
- 192.** [53-06-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
- 193.** [47-03-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94.** [58-07-5]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
- 195.** [57-09-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된다. ()
- 196.** [53-06-4]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의 신구성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
- 197.** [47-03-3]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자기의 공지디자인에 모두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98.** [46-07-2]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자기의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199.** [57-09-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200.** [57-09-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 201.** [53-06-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
- 202.** [55-08-1]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 203.** [52-06-4]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
- 204.** [49-05-1]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그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 205.** [57-09-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 · 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
- 206.** [55-08-2]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
- 207.** [49-05-3]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물론 그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도 소멸한다. ()
- 208.** [45-04-1]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 한다. ()
- 209.** [49-05-5] 관련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은 합체되므로 관련디자인권이 소멸하면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
- 210.** [55-08-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 211.** [55-08-4]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원칙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
- 212.** [55-08-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
- 213.** [53-06-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 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
- 214.** [48-02-1] 디자인권자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215.** [45-04-5] 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216.** [51-10-1] 관련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
- 217.** [51-10-2]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 218.** [49-05-2] 확인대상디자인이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219.** [45-04-2]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된 경우 그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
- 220.** [53-06-1]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 221.** [52-06-1]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

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222. [52-06-2]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223. [52-06-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224. [48-02-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25. [52-06-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

226. [57-09-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227. [49-05-4] 관련디자인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권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228. [48-02-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 할 수 없다. ()

229. [46-07-5]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후에 설정등록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230. [52-04-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231. [58-03-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 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

232. [51-10-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별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 하다. ()

233. [49-09-4] 기본디자인으로 표시된 디자인과 비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정 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한다. ()

234. [48-02-4]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자기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35. [48-02-5] 선출원된 자기의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236. [47-03-4] 자기의 관련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때,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등록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있다. ()

237. [47-03-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중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38. [46-07-3]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 권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39. [47-03-5]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중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240. [45-04-4]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협력할 수 있다. ()

241. [46-07-1] 기본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볼펜이고 관련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만년필인 경우, 그 만년필에 대하여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42. [45-04-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관련디자인등록출 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243. [46-07-4]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같은 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만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244. [49-10-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관련디자인을 출원 할 수 있다. ()

- 245.** [49-10-3]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관련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 246.** [51-07-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

신규성상실예외

- 247.** [49-0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자가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제36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
- 248.** [56-01] 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18년 3월 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유원지 시설에 설치하였다. 甲은 2018년 8월10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이 출원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은 2018년 12월 7일에 등록되었다. 乙은 2018년 6월 1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甲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 ② 甲이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 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 ③ 상기 ②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④ 乙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甲의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⑤ 甲의 등록디자인은 乙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판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甲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249.** [53-07-2]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 250.** [53-07-3]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 251.** [53-07-1]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 252.** [46-01-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 253.** [46-01-5] 제1국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국 출원일 전에 당해 디자인이 공개된 때에는 그 공개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 254.** [46-01-4]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 255.** [53-07-4]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 256.** [52-04-5]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 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57.** [53-07-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신규성의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58.** [48-01-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경우, 그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사실을 안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는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 성상실의 예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259. [46-01-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최초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분할하는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260. [46-01-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양만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 모양만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출원서 및 도면

261. [53-08-1]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

262. [53-08-5]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

263. [53-08-3]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

264. [53-08-4] 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흡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

265. [56-10-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66. [56-10-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67. [56-10-3]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사항이다. ()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268. [57-10-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

269. [57-10-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270. [52-01-1]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가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271. [59-03-4]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출원은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

272. [51-08-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하며,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

273. [51-08-2]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1물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다르다. ()

274. [51-08-4] 다용도 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

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

275. [49-10-4]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이를 거절이유로는 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할 수 없다. ()

276. [46-08-1]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초콜릿'이라고 기재되고, 첨부 도면에는 은박지로 포장한 초콜릿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40조 요건 만족한다. ()

277. [46-08-2]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승용차 및 자동차완구'라고 기재되고, 첨부 도면에는 승용차를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40조 요건 만족한다. ()

278. [46-08-3]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라고 기재되고, 첨부 도면에는 시계를 겸용할 수 있는 라디오를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40조 요건 만족한다. ()

279. [46-08-5]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연필'이라고 기재되고 첨부 도면에는 형상이 동일한 청색심의 연필과 적색심의 연필을 각각 나타낸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40조 요건 만족한다. ()

280. [53-02-4]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281. [46-08-4]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자전거'라고 기재되고, 첨부 도면에는 자전거용 폐달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40조 요건 만족한다. ()

부분디자인

282. [60-04-2]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 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283. [59-02-5]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

284. [45-07-2]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285. [55-07-1]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286. [59-02-1]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287. [55-07-5]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288. [55-07-2]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

289. [55-07-3]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90. [55-07-4]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징을 통해 창작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291. [47-02-1]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품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292. [47-02-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전체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293. [47-02-5]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전체디자인의 공지된 사실을 가지고 당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있

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 294.** [47-02-3]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설정하지 않고 디자인등록출원한 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추가하는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
- 295.** [51-04-1]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96.** [51-04-2]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297.** [51-04-3]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98.** [51-04-4]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299.** [51-04-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00.** [50-04-5]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301.** [59-02-4]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02.** [47-02-4]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전체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간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글자체디자인

- 303.** [60-02-1]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 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
- 304.** [60-02-2]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
- 305.** [60-02-4]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
- 306.** [58-03-1]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307.** [57-01-2]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
- 308.** [51-02-5]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 309.** [60-02-5]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 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
- 310.** [56-06-1]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
- 311.** [60-02-3]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 312.** [56-06-2]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313.** [56-06-3]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314.** [56-06-4]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
- 315.** [56-06-5]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 316.** [53-02-2]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
- 317.** [51-02-1] 2005년 7월 1일자 개정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상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 318.** [51-02-2]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
- 319.** [51-02-3]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320.** [51-02-4]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화상디자인

- 321.** [59-02-2]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 322.** [51-05-4]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면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 323.** [57-06-3]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화상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며,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화상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
- 324.** [53-02-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면을 표시한 상태로써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 325.** [51-08-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 화면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움직임에 형태적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없거나 변화의 과정이 도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
- 326.** [53-04-4]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와 변화상태를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판단하고,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서 변화를 구성하는 속도, 간격의 차이는 유사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 327.** [53-04-5] 변화하지 않는 “화상디자인”과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일부 정지상태의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변화하는 “화상디자인”的 정지상태의 해당 모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미감이 지배적이고 변화에 특이성이 없으면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식품디자인

- 328.** [57-06-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완성품과 부품

- 329.** [45-07-3]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330.** [60-08-5]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331.** [58-09-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 332.** [59-03-2]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 333.** [53-02-1]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
- 334.** [56-04]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②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③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될 수 있다.
 - ④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 335.** [60-04-1]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
- 336.** [53-04-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
- 337.** [50-03-1]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
- 338.** [50-03-5]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
- 339.** [50-03-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 340.** [50-03-3]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
- 341.** [50-03-4]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일부심사등록제도

- 342.** [49-04-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만을 심사한다. ()

- 343.** [58-05-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 거절결정될 수 있다. ()
- 344.** [58-05-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 거절결정될 수 있다. ()
- 345.** [58-05-3]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 거절결정될 수 있다. ()
- 346.** [58-05-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 거절결정될 수 있다. ()
- 347.** [58-05-5]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 거절결정될 수 있다. ()

복수디자인

- 348.** [49-10-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심사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복수디자인으로 100개의 범위 내에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 349.** [57-07-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 350.** [52-05-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 351.** [50-08-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 352.** [52-05-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 353.** [53-08-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54.** [56-10-4]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
- 355.** [56-10-5] 특허청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
- 356.** [57-07-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357.** [52-05-3] 비밀디자인 지정 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358.** [57-07-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 359.** [57-07-4]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에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
- 360.** [52-05-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 361.** [55-06-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
- 362.** [55-06-2]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 363.** [55-06-3]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 364.** [55-06-4]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
- 365.** [55-06-5]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

- 366.** [52-05-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 367.** [59-09-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 368.** [52-04-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 369.** [50-08-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370.** [52-01-4]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 371.** [50-08-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 372.** [57-07-5]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 373.** [50-08-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 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 374.** [50-08-5]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 375.** [50-09-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376.** [59-09-2]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
- 377.** [59-09-3]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 378.** [59-09-4]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 379.** [59-09-5] 특허청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

한 벌 물품의 디자인

- 380.** [59-04-2]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381.** [60-04-3]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 382.** [45-07-1]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383.** [54-09-3] 한 벌의 물품의 경우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
- 384.** [54-09-5] 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385.** [54-09-1]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샐러드 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 386.** [48-03-1]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를 구성하는 샐러드 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한 경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된다. ()
- 387.** [47-04-1]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각 물품의 형상 및 모양이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388.** [54-09-2] 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 389.** [51-01-1]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90.** [59-04-3]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 391.** [51-01-2]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한 벌 물품의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디자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성물품 중 2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디자인 심사기준상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
- 392.** [59-04-5]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
- 393.** [54-09-4]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94.** [59-04-1]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95.** [51-01-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면 되고, 한 벌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
- 396.** [53-04-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
- 397.** [57-10-4]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 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
- 398.** [51-01-3] 한 벌 물품에 대한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으며, 도면 또는 3D모델링 도면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
- 399.** [59-04-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400.** [51-01-4]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양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모두 등록가능하나, 등록 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구성물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
- 401.** [48-03-2]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0조(출원의 분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
- 402.** [48-03-3]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거나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403.** [48-03-4]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타인의 선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될 수 있다. ()
- 404.** [46-03-5]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A와 A에 관한 책상과 유사한 디자인등록출원 B가 같은 날 출원된 경우 A와 B는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제2항의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405.** [47-04-2]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이 공지된 경우,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공지된 구성물품에 대하여 신구성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406.** [48-03-5]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될 수 있다. ()
- 407.** [47-04-3]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만이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408.** [47-04-4] 복수의 한 벌 물품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하나의 한 벌 물품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고, 다른 한 벌 물품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409.** [47-04-5]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가운데 일부를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
- 410.** [46-03-1]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에 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는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받침대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411.** [46-03-2]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에 관한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412.** [46-03-3]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을 구성하는 각 물품의 손잡이 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413.** [59-02-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
- 414.** [46-03-4] 탁상용 라이터, 재떨이 및 담배함으로 구성되는 ‘한 벌의 꺽연용구 세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통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고, 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탁상용 라이터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415.** [48-10-1] 甲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①에 관한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 乙은 ①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

비밀디자인

- 416.** [58-02-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417.** [58-02-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 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418.** [57-10-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419.** [58-02-3]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 420.** [57-04-1]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 421.** [58-02-4]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 청구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쟁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22.** [58-02-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423.** [57-04-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24.** [57-04-3]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열람 청구한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
- 425.** [57-04-4]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6.** [57-04-5]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27.** [57-01-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428.** [54-08-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
- 429.** [54-08-2]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위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430.** [54-08-3]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 431.** [54-08-4]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 432.** [54-08-5]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위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433.** [50-07-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
- 434.** [50-07-2]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 435.** [50-07-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436.** [50-07-4]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에 위하여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437.** [50-07-5]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위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438.** [49-06-1] 비밀디자인에 관한 소송참가인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
- 439.** [49-06-2]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위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 440.** [49-06-3]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등록 디자인의 설정등록일 이후부터 비밀디자인의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으로서 선등록 비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위반으로 거절된다. ()
- 441.** [49-06-4]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
- 442.** [49-06-5]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위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 443.** [48-04-1] 등록디자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을 청구에 위하여 단축할 수 있다. ()

- 444.** [48-04-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판매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445.** [48-04-3]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 사전경고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이다. ()
- 446.** [48-04-4]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447.** [48-04-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 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 448.** [47-05-1] 조약당사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후, 대한민국에 그 디자인에 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449.** [47-05-2]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 450.** [47-05-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 451.** [47-05-4]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기간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수 없다. ()
- 452.** [47-05-5]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후 출원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밀디자인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 453.** [46-06-1]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비밀청구기간 중에 당해 비밀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 454.** [46-06-2]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공보가 발행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
- 455.** [46-06-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때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456.** [46-06-4]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간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후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
- 457.** [46-06-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으로 청구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출원공개 신청을 할 수 없다. ()
- 458.** [45-08-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459.** [45-08-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460.** [45-08-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
- 461.** [45-08-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62.** [45-08-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선출원주의

- 463.** [60-05-2]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

- 464.** [54-06-1]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 465.** [54-06-2]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별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별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
- 466.** [54-06-3]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67.** [54-06-4]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 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 468.** [50-05-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
- 469.** [50-05-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470.** [50-05-3]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
- 471.** [49-09-5]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디자인등록출원 한 자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이유, 무효사유,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
- 472.** [48-10-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 473.** [48-10-3]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74.** [48-10-4] 형틀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75.** [46-09-5] 선출원디자인이 형틀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디자인이 그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76.** [48-10-5] 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인 간의 협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
- 477.** [46-09-2] 후출원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출원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및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78.** [46-09-3] 2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보정 및 요지변경

- 479.** [58-08-1]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 480.** [58-08-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 481.** [58-08-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

- 482.** [57-08-2]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
- 483.** [57-08-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없다. ()
- 484.** [57-08-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 485.** [60-09-3] 출원보정기간은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ㄷ)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486.** [55-03-1]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 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 할 수 있다. ()
- 487.** [55-03-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
- 488.** [55-03-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 489.** [55-03-4]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
- 490.** [55-03-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 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491.** [53-01-5]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 ()
- 492.** [48-09-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 493.** [48-09-3]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 494.** [48-09-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 495.** [47-06-1]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자는 그 보정을 하는 때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 496.** [47-06-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에 대해 보정할 수 있다. ()
- 497.** [47-06-3]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가 아니면 보정을 할 수 없다. ()
- 498.** [47-06-5]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 499.** [46-10-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
- 500.** [46-10-2]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응접탁자와 소파에 관한 각각의 디자인등록출원을 병합하여 ‘한 벌의 응접세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 501.** [46-10-3]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때에는 당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
- 502.** [46-10-4]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되어 있는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디자인만을 디자인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

- 503.** [46-10-5]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 부분에 관한 설명 기재를 추가하는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
- 504.** [45-10-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
- 505.** [45-10-3]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506.** [45-10-4]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
- 507.** [45-10-5]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
- 508.** [45-10-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제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
- 509.** [57-08-1] 물품명의 보정에 있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
- 510.** [48-09-4] 디자인등록출원서 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 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것이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 511.** [57-08-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 도면의 보정에 있어,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
- 512.** [50-04-1]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513.** [50-04-2]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514.** [47-06-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저고리’에 관한 디자인이 기재되고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한복’이라고 기재된 것을 ‘저고리’라고 물품 명칭을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된다. ()
- 515.** [50-04-3] 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516.** [50-04-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
- 517.** [48-09-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심사관에 의해 결정각하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518.** [45-06-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519.** [59-10-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

출원의 분할

- 520.** [60-03-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
- 521.** [60-03-2]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
- 522.** [60-03-3]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 523.** [60-03-4]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 524.** [60-03-5]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신규성·상실의 예외) 제2항 제1호 또는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25.** [51-08-5]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 526.** [49-10-5]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자진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
- 527.** [58-08-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 528.** [58-08-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구성물품을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 529.** [57-10-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 530.** [53-03-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1.** [53-03-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각 구성물품별로 분할하는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2.** [53-03-3]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3.** [53-03-4]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4.** [53-0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5.** [51-03-1]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6.** [51-03-2]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 수가 10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7.** [51-03-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8.** [51-03-4]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한 벌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 ()
- 539.** [51-03-5]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요건을 만족한다. ()
- 540.** [45-01-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
- 541.** [45-01-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
- 542.** [45-01-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43. [45-01-4]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544. [45-01-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545. [54-07-1] 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주장 기간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
546. [54-07-2]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547. [53-01-1]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 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 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548. [54-07-3]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 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49. [54-07-4]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
550. [54-07-5]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
551. [45-02-1]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 ()
552. [45-02-2]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53. [45-02-3]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4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
554. [45-02-4]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55. [45-02-5]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 내용의 동일성은 실질상의 동일성을 말한다. ()

출원공개 및 보상금청구권

556. [55-01-5]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 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557. [54-10-2] 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
558. [54-10-3]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59. [54-10-4]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 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 ()
560. [54-10-5]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561.** [49-02-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 562.** [49-02-2] 출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하지 않는다. ()
- 563.** [49-02-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한다. ()
- 564.** [49-02-4] 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565.** [49-02-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보제공

- 566.** [49-08-1] 일부심사등록출원되고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567.** [49-08-2] 심사관은 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이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 568.** [49-08-3] 심사관은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발송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 여부,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
- 569.** [49-08-4]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 이상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한 차례만 통보한다. ()
- 570.** [49-08-5] 심사관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이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 3장

심사

j i i n DESIGN LAW

등록여부결정 / 직권보정 등

- 571.** [56-02-1]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
- 572.** [56-02-2]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
- 573.** [56-02-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 574.** [56-02-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575.** [56-02-5]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
- 576.** [53-01-3]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 577.** [53-01-4]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 578.** [59-10-4] 심판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579.** [51-09-2]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 580.** [58-04-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
- 581.** [57-05-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 ()
- 582.** [57-05-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연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
- 583.** [57-05-3]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584.** [57-05-4]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 585.** [57-05-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
- 586.** [57-01-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어진 것으로 본다. ()
- 587.** [56-05-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
- 588.** [56-05-2]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다. ()

- 589.** [56-05-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
- 590.** [56-05-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
- 591.** [56-05-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
- 592.** [53-01-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 593.** [50-09-1]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 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594.** [50-09-2]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
- 595.** [50-09-3]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
- 596.** [50-09-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 할 수 있다. ()
- 597.** [47-08-1]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보 발행일 후 3개월까지이다. ()
- 598.** [47-08-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 599.** [47-08-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
- 600.** [47-08-4] 특허청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601.** [47-08-5]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602.** [58-04-3]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603.** [58-04-4]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
- 604.** [59-06-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
- 605.** [59-06-2]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606.** [59-06-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 607.** [59-06-4]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 608.** [59-06-5]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제 4장 / 제 5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디자인권

j i i n DESIGN LAW

디자인권 일반

- 609.** [60-07-4]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 610.** [57-01-1]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611.** [60-07-1]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
- 612.** [60-07-2]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
- 613.** [60-07-3]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 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614.** [52-04-1]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 615.** [58-03-4]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
- 616.** [51-07-4]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
- 617.** [51-07-5]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 618.** [60-06-1]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
- 619.** [60-06-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 620.** [55-04-1]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21.** [58-09-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
- 622.** [57-02-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 623.** [54-05-3]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 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624.** [54-05-1]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625.** [54-05-4]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
- 626.** [60-08-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627.** [54-05-5]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628. [59-05-5]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629. [52-10-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630. [52-10-2]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그 출원 전에 반포된 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631. [59-10-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632. [47-09-1]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633. [47-09-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물품의 표면에 표현된 문자가 정보전달 이외에 물품의 장식을 위하여도 사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문자를 포함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한다. ()

이용·저촉 관계

634. [54-04-1] 등록디자인 상호 간의 이용관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 ()

635. [54-04-2]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636. [52-10-1]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637. [54-04-3]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638. [54-04-4]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639. [54-04-5]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640. [48-07-1]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641. [48-07-2]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 642.** [48-07-3]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643.** [48-07-4]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644.** [48-07-5]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645.** [46-04-1] 디자인권자 甲의 등록디자인 A와 乙의 등록디자인 B가 동일자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 A 및 디자인 B에 모두 유사한 디자인 C에 대하여 甲 및 乙은 서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 646.** [46-04-2] 디자인권자 甲은 독창적으로 창작한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저작권이 발생한 乙의 저작물과 동일한 형상인 때에는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647.** [46-04-3] 디자인권자 甲은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하는 경우로서 乙이 실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는 乙에 대해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3조)을 청구할 수 있다. ()
- 648.** [46-04-4] 디자인권자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중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丙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649.** [45-05-2]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
- 650.** [45-05-4]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 651.** [47-09-5]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652.** [52-10-4]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 653.** [55-04-2]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 654.** [55-04-4]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 655.** [52-09-1]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분할이 허용된다. ()
- 656.** [52-09-2]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657.** [52-09-3]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658.** [52-09-4]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659. [52-09-5]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

660. [59-07-3]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

실시권

661. [54-02-2]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乙에게 설정한 경우,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그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662. [50-06-1]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663. [50-06-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

664. [47-10-3] 디자인권자가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의 이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질권의 설정에 대한 동의권만을 가진다. ()

665. [47-10-4]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때에는 각 통상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의 통상실시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666. [46-04-5] 디자인권자 甲은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乙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과 동일한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丙에게 설정할 수 없다. ()

667. [45-05-5]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668. [51-07-1]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669. [59-07-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670. [59-07-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671. [49-03-1] 甲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발주하였으나, 그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甲의 사업 개시 후, 乙은 甲의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甲은 자신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672. [49-03-2]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중, 자금확보를 위하여 그 디자인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그 디자인권이 경매에 의하여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甲은 계속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물품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673. [49-03-3]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乙의 특허권과 저촉됨을 알고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실시하고 있던 중, 재심에 의해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674. [49-03-4]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乙은 등록료의 초기납부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초기납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乙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675. [49-03-5] 甲은 乙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丙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이었으나, 丙의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丙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676. [47-10-1]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1조)은 실시사업과 함께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

- 677.** [47-09-2] 정부는 등록디자인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수용하거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디자인권의 포기 / 질권 등

- 678.** [47-10-2]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679.** [47-10-5]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의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 680.** [57-01-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
- 681.** [50-06-3]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1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 682.** [45-05-1]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혀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 683.** [60-06-3]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
- 684.** [58-03-2]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
- 685.** [51-07-2]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혀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
- 686.** [59-07-4]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687.** [59-07-5]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688.** [60-06-4]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 689.** [60-06-5]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
- 690.** [58-03-5]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 6 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j i i n DESIGN LAW

디자인권의 침해

- 691.** [54-02-1]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692.** [55-04-3]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 693.** [53-09-1]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 694.** [53-09-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 695.** [53-09-3] 디자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에는 피해자 승소 판결의 신문 등에의 공고가 포함된다. ()
- 696.** [48-06-1]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통상실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697.** [48-06-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청구에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 698.** [48-06-3]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디자인의 실시가 필요하여 디자인권자와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699.** [47-09-4]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장치를 업으로서 수입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 ()
- 700.** [45-05-3]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

손해액의 추정 등

- 701.** [56-07-1]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702.** [56-07-2]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 703.** [56-07-3]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를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 704.** [56-07-4] 제115조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 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
- 705.** [56-07-5]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 706.** [55-04-5]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707.** [53-09-5]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4항의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배상액을 경감 할 수 있다. ()
- 708.** [54-02-4]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09.** [50-06-4]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 710.** [50-06-5]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711.** [53-09-4]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12.** [52-07-4]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 713.** [48-06-4]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714.** [48-06-5]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그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당해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제 7장 / 제 8장

심판

재심 및 소송

j i i n DESIGN LAW

- 715.** [47-07-3]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판관은 당해 출원에 대해 원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 716.** [54-02-3]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디자인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717.** [47-07-2]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에 대하여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718.** [47-07-5]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디자인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719.** [46-05-3] 심판장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분을 피청구인과 그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720.** [46-05-5] 자기의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당해 등록관련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721.** [45-06-4]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722.** [58-06-1]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 한 벌의 물품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 723.** [59-08-3]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 724.** [60-08-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 725.** [57-02-1]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 726.** [56-09-1]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 727.** [56-09-2]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
- 728.** [56-09-3]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
- 729.** [56-09-4]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 730.** [56-09-5]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731.** [59-10-5]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가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732.** [53-10-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733.** [51-10-4]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
- 734.** [51-10-5] 상고심 계속 중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

- 735.** [45-06-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
- 736.** [59-08-5]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737.** [46-05-1]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 738.** [47-07-4] 甲과 乙의 공동출원에 대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된 때, 甲이 대표자로 선정되어 특허청에 신고한 때에는 甲은 단독으로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739.** [59-08-2]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740.** [58-06-2]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 741.** [57-02-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 742.** [57-02-3]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
- 743.** [52-01-2]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 744.** [52-01-5]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 745.** [47-07-1] 심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
- 746.** [45-06-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 747.** [46-05-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대하여 불일치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디자인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748.** [59-08-1]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749.** [53-10-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흄을 보정 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면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 750.** [58-04-5]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 751.** [46-05-2]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
- 752.** [58-04-2]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 753.** [60-09-4]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2항에 따르면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ㄹ)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 754.** [45-06-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 755.** [53-10-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
- 756.** [53-10-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757.** [53-10-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758. [59-08-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
759. [58-06-3]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760. [57-02-4]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761. [51-09-1]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762. [58-06-4]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763. [58-06-5]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764. [52-01-3]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

제 9 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혜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j i i n DESIGN LAW

- 765.** [60-10-1]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 766.** [60-10-2]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제적인 요건 흡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
- 767.** [60-10-3]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해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 768.** [60-10-4]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해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
- 769.** [60-10-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해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 지정이 가능하다. ()
- 770.** [58-10-1]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
- 771.** [58-10-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해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772.** [58-10-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해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773.** [58-10-4]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해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
- 774.** [58-10-5]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
- 775.** [52-04-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해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
- 776.** [59-10-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해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 첨부할 수 있다. ()
- 777.** [56-03-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
- 778.** [56-03-2]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 779.** [56-03-3]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
- 780.** [56-03-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781.** [56-03-5]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해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82.** [55-09-1]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해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 783.** [55-09-2]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 784.** [60-07-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해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 785.** [55-09-3]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해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 786.** [55-09-4]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787. [55-09-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788. [54-03-1]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해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789. [54-03-2] 해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790. [54-03-3]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 할 수 있다. ()
791. [54-03-4]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
792. [54-03-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6 1 회 변 리 사 시 험 대 비

j i i n

DESIGN LAW

최근 16개년
기출지문 O X
연습용
정답

이준권

j i i n DESIGN LAW

1	O	51	X	101	O	151	O	201	X	251	O	301	O	351	O
2	O	52	X	102	O	152	X	202	X	252	O	302	O	352	X
3	X	53	O	103	X	153	X	203	O	253	O	303	X	353	O
4	O	54	X	104	O	154	O	204	X	254	X	304	O	354	O
5	O	55	O	105	O	155	O	205	X	255	X	305	X	355	O
6	O	56	X	106	O	156	O	206	O	256	X	306	O	356	O
7	O	57	O	107	O	157	O	207	X	257	X	307	X	357	O
8	X	58	O	108	O	158	O	208	X	258	X	308	O	358	O
9	O	59	O	109	X	159	O	209	X	259	X	309	X	359	X
10	X	60	X	110	O	160	X	210	O	260	O	310	X	360	O
11	X	61	O	111	O	161	X	211	X	261	O	311	X	361	O
12	X	62	O	112	O	162	O	212	O	262	O	312	O	362	O
13	O	63	X	113	O	163	O	213	O	263	O	313	O	363	O
14	O	64	X	114	O	164	O	214	X	264	X	314	O	364	X
15	X	65	O	115	X	165	X	215	O	265	O	315	O	365	O
16	O	66	O	116	X	166	O	216	X	266	O	316	X	366	O
17	O	67	O	117	O	167	O	217	X	267	X	317	X	367	O
18	O	68	X	118	O	168	O	218	X	268	X	318	O	368	O
19	O	69	O	119	O	169	O	219	X	269	O	319	O	369	X
20	X	70	O	120	O	170	X	220	O	270	O	320	O	370	O
21	X	71	O	121	O	171	X	221	X	271	O	321	O	371	O
22	O	72	O	122	X	172	O	222	X	272	O	322	O	372	O
23	O	73	O	123	O	173	O	223	X	273	O	323	O	373	O
24	O	74	O	124	O	174	X	224	O	274	X	324	X	374	X
25	X	75	O	125	O	175	O	225	X	275	O	325	O	375	X
26	X	76	O	126	X	176	O	226	X	276	O	326	O	376	O
27	O	77	X	127	X	177	O	227	O	277	X	327	O	377	O
28	O	78	O	128	O	178	O	228	O	278	O	328	O	378	O
29	X	79	O	129	O	179	O	229	X	279	X	329	O	379	X
30	O	80	O	130	X	180	X	230	O	280	X	330	O	380	O
31	O	81	X	131	X	181	O	231	X	281	X	331	O	381	O
32	O	82	X	132	O	182	O	232	X	282	O	332	O	382	X
33	O	83	O	133	X	183	O	233	O	283	O	333	X	383	X
34	X	84	O	134	X	184	X	234	X	284	X	334	④	384	O
35	X	85	O	135	O	185	O	235	O	285	O	335	O	385	O
36	X	86	O	136	X	186	O	236	O	286	O	336	X	386	O
37	X	87	O	137	X	187	X	237	X	287	O	337	O	387	X
38	O	88	O	138	X	188	O	238	X	288	O	338	O	388	O
39	O	89	X	139	O	189	O	239	X	289	X	339	X	389	O
40	X	90	X	140	O	190	O	240	O	290	O	340	O	390	O
41	X	91	X	141	O	191	O	241	X	291	O	341	O	391	O
42	X	92	O	142	O	192	O	242	X	292	X	342	X	392	X
43	O	93	X	143	X	193	X	243	X	293	O	343	O	393	O
44	O	94	O	144	O	194	X	244	O	294	O	344	X	394	O
45	2개월	95	O	145	O	195	X	245	O	295	X	345	O	395	X
46	1년	96	O	146	X	196	O	246	X	296	O	346	X	396	O
47	O	97	X	147	X	197	X	247	O	297	O	347	O	397	X
48	X	98	X	148	O	198	O	248	③	298	O	348	X	398	X
49	O	99	O	149	O	199	O	249	X	299	O	349	O	399	O
50	X	100	O	150	O	200	X	250	X	300	O	350	O	400	O

401	X	451	O	501	O	551	X	601	X	651	X	701	O	751	X
402	X	452	X	502	O	552	X	602	O	652	X	702	O	752	O
403	X	453	X	503	O	553	X	603	X	653	X	703	O	753	3일
404	O	454	X	504	O	554	X	604	O	654	O	704	X	754	X
405	X	455	O	505	X	555	O	605	O	655	X	705	O	755	O
406	O	456	X	506	X	556	O	606	X	656	O	706	O	756	O
407	X	457	X	507	X	557	O	607	O	657	O	707	O	757	O
408	X	458	X	508	X	558	O	608	O	658	O	708	O	758	X
409	O	459	O	509	X	559	X	609	X	659	O	709	O	759	X
410	O	460	X	510	O	560	O	610	O	660	X	710	O	760	O
411	O	461	X	511	O	561	O	611	X	661	X	711	X	761	O
412	O	462	X	512	O	562	O	612	X	662	O	712	X	762	O
413	X	463	X	513	X	563	X	613	X	663	O	713	O	763	O
414	X	464	O	514	X	564	X	614	O	664	X	714	X	764	X
415	X	465	O	515	O	565	O	615	X	665	O	715	X	765	X
416	X	466	X	516	O	566	O	616	O	666	X	716	X	766	O
417	O	467	O	517	O	567	O	617	O	667	X	717	O	767	O
418	O	468	X	518	X	568	X	618	O	668	O	718	X	768	O
419	X	469	X	519	O	569	O	619	O	669	O	719	X	769	O
420	O	470	X	520	O	570	O	620	O	670	O	720	O	770	O
421	X	471	O	521	O	571	O	621	X	671	X	721	O	771	X
422	X	472	O	522	O	572	O	622	O	672	O	722	X	772	X
423	O	473	X	523	X	573	O	623	O	673	O	723	X	773	X
424	X	474	O	524	O	574	X	624	O	674	O	724	O	774	X
425	O	475	O	525	O	575	O	625	X	675	O	725	O	775	O
426	O	476	O	526	O	576	O	626	O	676	X	726	O	776	O
427	O	477	O	527	O	577	O	627	O	677	X	727	X	777	X
428	O	478	X	528	O	578	X	628	O	678	X	728	O	778	X
429	O	479	X	529	O	579	X	629	O	679	X	729	O	779	X
430	O	480	O	530	X	580	O	630	O	680	O	730	O	780	X
431	O	481	O	531	X	581	O	631	O	681	X	731	O	781	O
432	X	482	X	532	O	582	O	632	X	682	X	732	O	782	X
433	O	483	X	533	X	583	O	633	O	683	O	733	X	783	O
434	O	484	X	534	O	584	O	634	O	684	X	734	O	784	O
435	X	485	30일	535	X	585	X	635	X	685	X	735	X	785	X
436	X	486	X	536	O	586	O	636	O	686	O	736	X	786	X
437	O	487	O	537	X	587	X	637	O	687	O	737	X	787	X
438	O	488	O	538	X	588	O	638	X	688	O	738	X	788	O
439	X	489	O	539	O	589	X	639	O	689	X	739	X	789	O
440	O	490	O	540	O	590	X	640	X	690	O	740	X	790	X
441	O	491	X	541	O	591	X	641	X	691	X	741	O	791	O
442	O	492	O	542	X	592	O	642	O	692	O	742	X	792	O
443	X	493	X	543	X	593	O	643	X	693	O	743	O	793	
444	O	494	O	544	X	594	X	644	X	694	O	744	O	794	
445	X	495	O	545	O	595	X	645	O	695	O	745	X	795	
446	X	496	O	546	X	596	X	646	X	696	X	746	X	796	
447	X	497	X	547	O	597	O	647	X	697	X	747	X	797	
448	O	498	X	548	O	598	X	648	X	698	X	748	O	798	
449	X	499	X	549	O	599	X	649	O	699	X	749	X	799	
450	X	500	X	550	O	600	X	650	X	700	X	750	O	800	